

의 안 번 호	제 874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4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 유재목,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마을에 대한 마을 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귀농어·귀촌 유도 및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규정 조문의 정비 (안 제1조)
-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 마을공동체의 책무 규정 신설 (안 제4조)
- 마을공동체 지원금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1조)
- 마을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4조)
- 실효성 없는 시행규칙 규정 삭제 (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5. 3.
- 협 의 : 농정국 농업정책과
- 비용추계 :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북도”를 “충청북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3호”를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을공동체”란 행정리 기준으로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과 협약한 마을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귀농어업·귀촌인 등의 책무) ①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귀농어업·귀촌인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는 귀농어업·귀촌인의 정착 및 융화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귀농어업·귀촌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의 지원 사업
2. 귀농어업·귀촌인의 초기 정착 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 융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귀농어업·귀촌인이”를 “귀농어업·귀촌인 및 마을공동체가”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북도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 3. ~ 5. (현행과 같음) 6. “마을공동체”란 행정리 기준으로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

제4조(귀농어업·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1조(정착자금 지원) 도지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농어업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융자
2.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융자

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과 협약한 마을을 말한다.

제4조(귀농어업·귀촌인 등의 책무)

①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귀농어업·귀촌인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는 귀농어업·귀촌인의 정착 및 융화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귀농어업·귀촌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지원 사업
2. 귀농어업·귀촌인의 초기 정착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정착 및 지역사회 융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제14조(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①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받은 귀농어업·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상으로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① -----
-----귀농어업·귀촌인 및 마을공동체가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관련법령 발췌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관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마을공동체에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및 융화촉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

2. 비용 발생 요인

- 귀농귀촌지원금 관리 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지원대상으로 전입한 세대당(가구수 비례) 지원금 지급

3. 관련조문

- 목적규정 조문의 정비 (안 제1조)
-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 마을공동체의 책무 규정 신설 (안 제4조)
- 마을공동체 지원금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1조)
- 마을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4조)
- 실효성 없는 시행규칙 규정 삭제 (안 제15조)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귀농귀촌 지원금 관리 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전입한 세대당 지원금 지급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3년간 총 32.4억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시·군비
 -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270,000	1,620,000	1,350,000	—	—	3,240,000
마을 지원금 지원	270,000	1,620,000	1,350,000	—	—	3,240,000
재원 조달	270,000	1,620,000	1,350,000	—	—	3,240,000
도 비	108,000	648,000	540,000	—	—	1,296,000
시군비	162,000	972,000	810,000	—	—	1,944,000